|  |  |  |  |
| --- | --- | --- | --- |
| |  | | --- | | **국가세무국, 국가외환관리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국,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3년 제40호  대외지급 편의와 크로스보더(跨境)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경내 기구와 개인이 경외에 등가 5만 USD 이상(5만USD 불포함, 이하 동일)의 하기외화자금을 지급한 경우, 본 공고 제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재지 주관국세기관에서 세무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이 지세기관뿐인 경우, 소재지 동급 국세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1) 경외 기구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획득한 운송, 관광, 통신, 건축설치 및 노무도급,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독점권리 사용과 특허, 스포츠문화와 오락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의 서비스무역수입이 이에 포함된다.  (2) 경외 개인이 경내의 작업보수, 경외기구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획득한 주식배당금, 보너스, 직접채무이자, 담보비 및 비자본이전 기부, 배상, 세수, 우연성소득 등 수익과 경상이전수입  (3) 경외 기구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획득한 금융리스임대료, 부동산의 양도수입, 지분양도소득 및 외국투자자의 기타 합법적인 소득  외국투자자가 경내 직접투자의 합법적인 소득으로 경내에 1회 재투자한 금액이 5만USD 이상인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2. 경내 기구와 개인(이하 ‘등록인’)은 대외지급 세무등록 진행 시, 주관국세기관에 회사인감이 날인된 계약서(협의서) 또는 관련 거래증빙 복사본 (외국어 원문은 중국어 번역본 동시 첨부)을 제출하고,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서》(3부, 이하 《등록서》, 첨부1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동일한 계약에 대한 수회 대외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등록인은 반드시 매회 외환송금 이전에 세무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최초 외환송금 등록 시에만 계약서(협의서) 또는 관련 거래증빙 복사본을 제출한다.  3.경내 기구와 개인이 다음의 외화자금을 대외 지급한 경우, 《등록서》의 제출 및 처리할 필요가 없다.  (1) 경내 기구의 경외에서 발생한 출장, 회의, 상품전시 등 각종 비용  (2) 경내 기구의 경외 대표기구 사무경비, 및 경내 기구의 경외 도급공정대금  (3) 경내 기구의 경외에서 발생한 수출입무역 커미션, 보험료, 배상금  (4) 수입무역항목의 경외 기구가 획득한 국제운송비용  (5) 보험항목의 보험료, 보험금 등 관련 비용  (6) 운송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경내 기구의 경외에서 발생한 수리, 연료유, 항구잡비 등 각종 비용  (7) 경내 여행사의 해외여행업무 단체비 및 대리예약, 대행한 숙박, 교통 등 관련 비용.  (8)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집단 산하 국제금융회사가 중국에서 취득한 소득 또는 수입에는 투자합영기업이 배당 받은 이윤과 주식양도소득, 중국 내 재산 (건축물 포함) 임대 또는 양도수입 및 중국 경내 기구에 대출을 제공하여 취득한 이자가 포함된다.  (9) 외국 정부와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에 제공하는 외국 정부 (전)대출금(외국 정부 혼합(전)대출금 포함)과 국제금융조직 대출금항목의 이자. 본 항에서 가리키는 국제금융조직이란, IMF, 세계은행집단, 국제개발협회, 국제농업발전기금, 유럽투자은행 등을 말한다.  (10) 외환지정은행 또는 재무회사 자체의 대외융자와 경외 차입금, 경외 은행간 단기융자, 해외 대리지급 및 기타 채무 등 항목의 이자  (11) 중국 성급이상국가기관의 대외적인 무상기부지원자금  (12) 경내 증권회사 또는 등기결제회사가 경외 기구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법에 따라 획득한 배당금, 이자수입 및 유가증권 매각소득과 수익  (13) 경내 개인의 경외 유학, 관광, 귀성 등 사적인 외화사용  (14) 경내 기구와 개인이 처리하는 서비스무역과 수익, 경상이전항목의 송금환 환불  (15) 국가가 규정한 기타 상황  4.경외 개인의 서비스무역과 수익, 경상이전항목의 대외지급 처리는 개인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5.등록인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등록서》를 획득할 수 있다.  (1) 주관국세기관세무처리서비스센터 창구에서 수령한다.  (2) 주관국세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다.  6.등록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전하고 《등록서》 작성이 완벽한 경우, 주관국세기관은 현장에서 납세사항을 심사할 필요 없이《등록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서》에 날인하여 1부는 현장에서 등록인에게 반환하고 1부는 보관, 1부는 다음달 10일 전까지 우편 또는 기타 방식으로 등록인의 주관지세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등록서》 일련번호의 구체서식: 연도(2자리)+세무기관코드(6자리)+순서번호 (6자리)이다. ‘연도’란 양력년도의 마지막 2자릿수를 말하며, ‘순서번호’는 당해연도 자연순서번호이다.  7.등록인은 세무등록수속을 끝낸 후, 주관국세기관이 날인한 《등록서》에 근거하여,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송금 심사수속을 진행한다.  8.주관국세기관 또는 지세기관은 《등록서》를 수취한 후 15업무일 내에, 등록인이 제출한 《등록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등록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정보와 실제 지급항목의 일치 여부.  (2) 대외지급항목은 규정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는지의 여부  (3) 감면세 대우를 신청할 경우, 관련 세수법률법규와 세수협정(조치)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9.주관세무기관의 심사 결과 대외지급항목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또는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세수법률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0.주관국세기관과 지세기관은 대외지급 세무등록사항 관리를 강화하고, 대외지급 등록상황 및 세수징수관리 상황을 즉시 통계하며,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상황 연도통계표》(첨부2 참조)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 전까지 세무총국(국제세무사)에 제출해야 한다.  11.각급 세무부문과 외환관리부문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보교환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상급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12.본 공고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외국회사의 선박운송수입의 세수관리 및 국제 해운업의 대외지급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국세발[2001]139호)와 《외국회사 선박운송수입의 세수관리 및 국제해운업 대외지급 관리 강화에 대한 보충통지》(국세발[2002]107호), 《경내 기구 및 개인이 대외로 기술양도비용 지급 시 영업세 세무증빙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음에 대한 통지》(국세발[2005]28호),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증명서 제공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회발[2008]64호),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급 세무증명서 발급 관리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 [2008]122호), 《국가세무총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증명 발급 관리방법 전파에 대한 통지》(회발[2009]1호),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증명서 제공 관련 문제 진일보 명확화에 대한 통지》(회발[2009]52호),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증명 발급신청서> 수정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4호)는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첨부:  1.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서  2.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상황 연도통계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2013년7월9일  동시송달: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대련·청도· 하문·녕파시분국. | |  | **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  **关于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税务备案 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公  2013年第40号    　　为便利对外支付和加强跨境税源管理，现就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税务备案有关问题公告如下：  　　一、境内机构和个人向境外单笔支付等值5万美元以上（不含等值5万美元，下同）下列外汇资金，除本公告第三条规定的情形外，均应向所在地主管国税机关进行税务备案，主管税务机关仅为地税机关的，应向所在地同级国税机关备案：  　　（一）境外机构或个人从境内获得的包括运输、旅游、通信、建筑安装及劳务承包、保险服务、金融服务、计算机和信息服务、专有权利使用和特许、体育文化和娱乐服务、其他商业服务、政府服务等服务贸易收入；  　　（二）境外个人在境内的工作报酬，境外机构或个人从境内获得的股息、红利、利润、直接债务利息、担保费以及非资本转移的捐赠、赔偿、税收、偶然性所得等收益和经常转移收入；  　　（三）境外机构或个人从境内获得的融资租赁租金、不动产的转让收入、股权转让所得以及外国投资者其他合法所得。  　　外国投资者以境内直接投资合法所得在境内再投资单笔5万美元以上的，应按照本规定进行税务备案。  　　二、境内机构和个人（以下称备案人）在办理对外支付税务备案时，应向主管国税机关提交加盖公章的合同（协议）或相关交易凭证复印件（外文文本应同时附送中文译本），并填报《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税务备案表》（一式三份，以下简称《备案表》，见附件1）。  　　同一笔合同需要多次对外支付的，备案人须在每次付汇前办理税务备案手续，但只需在首次付汇备案时提交合同（协议）或相关交易凭证复印件。  　　三、境内机构和个人对外支付下列外汇资金，无需办理和提交《备案表》：  　　（一）境内机构在境外发生的差旅、会议、商品展销等各项费用；  　　（二）境内机构在境外代表机构的办公经费，以及境内机构在境外承包工程的工程款；  　　（三）境内机构发生在境外的进出口贸易佣金、保险费、赔偿款；  　　（四）进口贸易项下境外机构获得的国际运输费用；  　　（五）保险项下保费、保险金等相关费用；  　　（六）从事运输或远洋渔业的境内机构在境外发生的修理、油料、港杂等各项费用；  　　（七）境内旅行社从事出境旅游业务的团费以及代订、代办的住宿、交通等相关费用；  　　（八）亚洲开发银行和世界银行集团下属的国际金融公司从我国取得的所得或收入，包括投资合营企业分得的利润和转让股份所得、在华财产（含房产）出租或转让收入以及贷款给我国境内机构取得的利息；  　　（九）外国政府和国际金融组织向我国提供的外国政府（转）贷款（含外国政府混合（转）贷款）和国际金融组织贷款项下的利息。本项所称国际金融组织是指国际货币基金组织、世界银行集团、国际开发协会、国际农业发展基金组织、欧洲投资银行等；  　　（十）外汇指定银行或财务公司自身对外融资如境外借款、境外同业拆借、海外代付以及其他债务等项下的利息；  　　（十一）我国省级以上国家机关对外无偿捐赠援助资金；  　　（十二）境内证券公司或登记结算公司向境外机构或境外个人支付其依法获得的股息、红利、利息收入及有价证券卖出所得收益；  　　（十三）境内个人境外留学、旅游、探亲等因私用汇；  　　（十四）境内机构和个人办理服务贸易、收益和经常转移项下退汇；  　　（十五）国家规定的其他情形。  　　四、境外个人办理服务贸易、收益和经常转移项下对外支付，应按照个人外汇管理的相关规定办理。  　　五、备案人可通过以下方法获取《备案表》：  　　 （一）在主管国税机关办税服务厅窗口领取；  　　 （二）从主管国税机关官方网站下载。  　　六、备案人提交的资料齐全、《备案表》填写完整的，主管国税机关无须当场进行纳税事项审核，应编制《备案表》流水号，在《备案表》上盖章，1份当场退还备案人，1份留存，1份于次月10日前以邮寄或其他方式传递给备案人主管地税机关。  　　《备案表》流水号具体格式为：年份（2位）+税务机关代码（6位）+顺序号（6位）。“年份”指公历年度后两位数字，“顺序号”为本年度的自然顺序号。  　　七、备案人完成税务备案手续后，持主管国税机关盖章的《备案表》，按照外汇管理的规定，到外汇指定银行办理付汇审核手续。  　　八、主管国税机关或地税机关应自收到《备案表》后15个工作日内，对备案人提交的《备案表》及所附资料进行审查，并可要求备案人进一步提供相关资料。审查的内容包括：  　　（一）备案信息与实际支付项目是否一致；  　　（二）对外支付项目是否已按规定缴纳各项税款；  　　（三）申请享受减免税待遇的，是否符合相关税收法律法规和税收协定（安排）的规定。  　　九、主管税务机关审查发现对外支付项目未按规定缴纳税款的，应书面告知纳税人或扣缴义务人履行申报纳税或源泉扣缴义务，依法追缴税款，按照税收法律法规的有关规定实施处罚。  　　十、主管国税机关、地税机关应加强对外支付税务备案事项的管理，及时统计对外支付备案情况及税收征管情况，填写《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税务备案情况年度统计表》（见附件2），并于次年1月31日前层报税务总局（国际税务司）。  　　十一、各级税务部门、外汇管理部门应当密切配合，加强信息交换工作。执行过程中如发现问题，应及时向上级部门反馈。  　　十二、本公告自2013年9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 国家外汇管理局关于加强外国公司船舶运输收入税收管理及国际海运业对外支付管理的通知》（国税发〔2001〕139号）、《国家税务总局 国家外汇管理局关于加强外国公司船舶运输收入税收管理及国际海运业对外支付管理的补充通知》（国税发〔2002〕107号）、《国家税务总局 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内机构及个人对外支付技术转让费不再提交营业税税务凭证的通知》（国税发〔2005〕28号）、《国家外汇管理局 国家税务总局关于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提交税务证明有关问题的通知》（汇发〔2008〕64号）、《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出具税务证明管理办法〉的通知》（国税发〔2008〕122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转发国家税务总局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出具税务证明管理办法的通知》（汇发〔2009〕1号）、《国家外汇管理局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明确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提交税务证明有关问题的通知》（汇发〔2009〕52号）和《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出具税务证明申请表〉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54号）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  1.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税务备案表（略）  　　2.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备案情况年度统计表（略）  国家税务总局  国家外汇管理局  　　2013年7月9日    　　分送：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 |